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28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박은정・김준형・조 국

이해민 · 강경숙 · 김재원

김선민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 · 황운하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 지역, 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까 불안에 떨고 있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여성 군인까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2019년의 N번방사건에 이어 딥페이크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제대 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중 73.6%가 10대인 점으로 드러나듯, 10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장난거리로 여겨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발견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고 피해는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삭제·모니터링 의뢰 비 용까지 부담시키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

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의2).
- 나. 허위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4조의2)
- 다.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 라.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 포함)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14조의5).

- 마.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 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상이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영상물의 사본을 취득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명함으로써 피해 영상물을 압수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 사.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고, 범죄지 및 피의자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초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가 수사하여야 함(안 제25조의3).
- 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성범죄 녹음· 녹화매체등에 대한 증거조사 시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피해자 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녹음·녹화

매체 등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31조 단서 신설 및 안 제31조의2).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성적괴롭힘) 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사람의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로 하고,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를 "사람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형태로"로 하고,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년"으로 한다.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 차단 요청
 -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 3. 피해 신고 · 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4조의5(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한다.
 - ②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항의"를 "사항,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 3.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 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 ·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 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22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 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 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2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 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 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인적사항과 사진"을 "인적사항과 사진, 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진"을 "사진, 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상 이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영상에 대한 압수)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영상물의 사본을 취득 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명함으로써 피해 영상물을 압수한다.

- 제25조의3(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 및 피의자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초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가 수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27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재판장은 제4항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 상황,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⑥ 재판장이 제5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

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성범죄 사진·영상물 또는 음성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녹화매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 시에는 그 심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31조의2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필요가 있는 녹음·녹화매체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을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 2.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의 음향을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 터에 연결된 개별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 3. 범죄사실의 증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을 재생하는 방법
 - 4. 기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 제41조의2(성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①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거 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 의 관계서류나 증거물 중 피해자 본인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피해 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의 열람 또 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 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③ 열람 또는 등사에 있어 허가의 조건, 사용 제한 등에 있어서는 제27조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신원과"를 "신원, 비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적사항과 사진"을 "인적사항, 사진, 비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여 <u>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u>	<u>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u>
<u>일으키는</u> 말, 음향, 글, 그림,	로 하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u><신 설></u>	제13조의2(성적괴롭힘) 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
	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u>촬</u> 영대상자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u>7천만원</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사람의</u>
<u>X}</u>
람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 하
<u>는 형태로</u>
<u>7년</u>
<u>7천만원</u>
②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생 략)

<신 설>

<u>7년</u>
<u>7천만원</u>
③
<u>10년</u>
④ (현행과 같음)
네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
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
<u>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u>
제 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

卫

-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 련 절차 안내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 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4조의5(몰수 및 추징) ① 제14 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 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 ②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장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의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7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 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 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 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 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 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 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 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 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 한 <u>사항의</u>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_Гı	범죄수	익은	극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8조	내
	<u>지</u>	제103	조의 -	규정을	을 준용	♪한디	<u>}.</u>
제	173	조(판	결 전	조사) ① -		
		- <u>사항,</u>	피하	자의	연령	, I	해
	<u>의</u>	결과	및 정	도, :	피해 3	회복	여
	<u>부,</u>	피해	자의	처벌	불원 9	<u> </u>	등
	피 7	해자이	관현	<u> </u>	<u>항의</u>		
-5					같음)		,
제					범죄의		
					관리는		
	<u>조</u>	내지	제14	소의는	}에 하	당히	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 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 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 다)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3.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 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

- 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 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 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 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 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 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 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

<신 설>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 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 용한다.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 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 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

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 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

<신 설>

<신 설>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
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
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상 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 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신 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인적사항과 사진, 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u>정보</u>
,
②
<u>사진, 비공개 재판</u>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u>정보</u>

다.

<신 설>

---.

제25조(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정보통신 망에서 발견한 경우,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상이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영상에 대한 압수)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전기통신
사업자가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영
상물의 사본을 취득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명함으로써
피해 영상물을 압수한다.

제25조의3(관할의 특례) ① 제14 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 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 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④ (생 략) <신 설>

<u><신</u>설>

범죄지 및 피의자 등이 불명확 한 경우에는 최초 사건을 접수 한 수사관서가 수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 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 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 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판장은 제4항의 열람 또 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 상황,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 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 지한다.

⑥ 재판장이 제5항에 따라 열 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 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 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 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4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인 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 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
는 일부가 등장하는 등 피해자
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녹음・
녹화매체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을 판 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 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 2.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의 음 향을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 별 모니터에 연결된 개별음향 장치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 3. 범죄사실의 증명 등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해당 녹음·녹화매체등을 재 생하는 방법
- 4. 기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 제41조의2(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①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 거 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 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 중 피해자 본인 진술서 류 및 제출서류,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사 진 또는 영상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제50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
 항에 따른 피해자의 <u>신원과</u>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를 위반한 자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u>인적사항과 사진</u> 등을 공개한 자

③ ~ ⑤ (생 략)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③ 열람 또는 등사에 있어 허
가의 조건, 사용 제한 등에 있
어서는 제27조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신원, 비
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
해 알게 된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2
<u>인</u> 적사항, 사진, 비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해 알
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

③ ~ ⑤ (현행과 같음)